

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익성과 창출 기여자 보상 지침

제정 2024년 11월 15일
개정 2025년 12월 19일
<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>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익성과 창출 기여자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익성과 창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보상 대상자)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익성과 창출을 통한 기여 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기술이전 기여자: 연구 개발 결과물의 실시를 위한 전략 수립, 기술평가, 마케팅, 협상, 계약체결, 사후관리 등에 직접 기여한 자
- ② 사업화 수익성과 창출 기여자: 재정적 기여금, 투자회수 수익금, 사업화 수익 창출금 등에 직접 기여한 자

제3조(보상 기준 금액)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익성과 창출 기여자보상금은 기술료 및 수익금에서 경비(중개수수료 포함)를 모두 차감하고 10%이내에서 평가에 따라 지급하며, 지급 대상은 제2조(보상 대상자)에 따라 지급한다.

제4조(보상 신청) ① 기술료 및 수익금(기여금 포함)이 입금되면 기여자는 3개월 이내에 기술료 입금 건별로 기술이전 보상신청서, 사업화 수익성과 창출 보상신청서(이하“기여자 보상신청서”라 한다)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기여자 보상신청서에는 기술이전 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기여 활동 내용 및 기여자별 기여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상금의 평가) ① 기여자 인정 여부 및 보상금액은 산학협력단장이 평가하여 결정하며, 필요에 따라 기관 감사,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거나,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.

② 기여자 보상평가는 발생 건에 따라 실시하되,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기여자의 임기 만료 및 전보에 따라 학년도 중에 보상이 필요한 경우

2. 기타 보상이 필요하다고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③ 제4조 1항의 기여자 보상신청서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평가한다.

1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익 건별 기여자 인정 여부 및 보상금액

2. 기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, 각자의 기여율 차등 결정

제6조(보상금의 지급) 기여자보상금은 제5조에 의거 보상평가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